



문서번호	교육지원과-798
결재일자	2016. 1. 28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구청장 방침 제24호

주무관	혁신교육특구팀장	교육지원과장	행정관리국장	부구청장	구청장
박미정	장영교	代이광현	김종순	이비오	01/28 정원오
협 조					
	교육정책전문관	이재연			

**제2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 설립 관련
성동구-서울시교육청 업무협약 추진 계획**



**성 동 구
(교육지원과)**

제2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 설립 관련 성동구-서울시교육청 업무협약 추진 계획

□ 협약식 개요

- 협 약 일: 2016. 1. 28.(목) 10:30 ~ 11:30
- 장 소: 시교육청 기자회견실(201호)
- 협약기관: 성동구(구청장) ⇔ 서울시 교육청(교육감)
- 참 석 자: 14명
 - 성동구청: 정원오 성동구청장, 김종순 행정관리국장, 김재겸 안전건설교통국장, 어용경 공보담당관, 엄원식 교육지원과장, 이윤영 기획예산과장, 조덕현 교통행정과장, 박주완 토목과장 7명
 - 시교육청: 조희연 교육감, 이근표 교육정책국장, 이무수 교육행정국장, 윤여신 예산담당관, 한상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, 최영식 교육시설안전과장, 이종배 교육혁신과장 7명

□ 행사 일정

시 간	내 용	비 고
10:10~10:30(20)	티타임	교육감실
10:30~11:00(30)	<협약식> 1. 개회사 2. 협약식 배경 및 내용 안내 3. 참석자 소개 4. 협약서 서명 및 교환 5. 기념촬영(교육감, 구청장)	기자회견실(201) 사 회 자 (심금순 장학관)
11:00~11:30(30)	<기자회견> 1. 교육감, 성동구청장 기자회견 2. 질의 응답 3. 관계자 기념촬영	기관 대표 참석자

협약내용

- 협약기간: 2016. 1. 28. ~ 협약 해지 시까지
- 지원대상: 성동구민, 성동구 소재 학교학생, 성동구청 직원 자녀
- 협약목적
 - 학생들의 지성, 감성, 인성을 깨우는 문화예술교육 강화로 미래인재 양성
 -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로 삶의 질 향상
- 협약내용
 1. 창의·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지원 및 시설구축
 2. 창의·문화예술 관련 교원 역량강화 연수 및 프로그램 지원
 3. 문화예술 관련 자녀코칭 및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지원
 4. 학생, 학부모,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
 5.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인적·물적 자원 교육기부 활성화
 6. 센터 건립 및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추진

향후계획

- 2016. 2. ~ 11. : 설계 및 공사
- 2016. 12. ~ : 개관 및 진로·진학 및 문화예술 교육협력

기대효과

-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활용한 학교 지원 방안 확대
- 마을학교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회복

붙임: 협약서(안) 1부. 끝.

마을과 학교의 문화예술 희망동행!

협약서

성동구와 서울특별시교육청(이하'교육청'이라 한다)은 상호 존중과 신뢰의 바탕 위에서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'성동구'와 '교육청'이 상호 연계 협력하여 서울 학생의 문화예술 역량 및 학부모·주민의 역량 강화 연수를 지원함으로써 교육공동체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분야) '성동구'와 '교육청'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고, 이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한다.

1. 창의·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지원 및 시설구축
2. 창의·문화예술 관련 교원 역량강화 연수 및 프로그램 지원
3. 문화예술 관련 자녀코칭 및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지원
4. 학생, 학부모,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
5.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인적·물적 자원 교육기부 활성화
6. 센터 건립 및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추진

제3조(협력방법) 2조의 협력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협의 창구를 항상 유지하고 세부사항이나 해석상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'성동구'와 '교육청'의 상호 협의 하에 별도로 정한다.

제4조(협약내용의 변경) 양측은 본 협약서의 실행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양 기관의 상호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검토하여 상호 협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.

제5조(비밀유지) 본 협약서와 관련된 협력 및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기관의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.

제6조(협약서의 효력 및 해지)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며, 양 기관의 협약변경이나 해지 등 의사표현이 없을 경우 협약기간은 1년 단위로 자동연장된 것으로 본다.

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각 기관에서 1부씩 보관한다.

2016년 1월 28일


성동구
구청장 정 원 오


서울특별시교육청
교육감 조 희 연